

PC통신망에 게재된 「이적표현물」의 국가보안법 적용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최근
PC통신망에 게재된
「이적표현물」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심으로
「불온통신물」 게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PC통신망의 중요성

PC통신망에 개설된 「여론마당」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론마당」에 게재된 내용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주요 정당이 개설한 게시판에 전송되고 있으며 관련부처에서도 이를 정책자료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서브의 「백악관마당」(White House Forum)

에는 대통령, 과학기술, 국제·유엔, 방위, 경제, 교육 등 총 16개 분야의 메뉴가 개설되어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1백만명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천리안과 하이텔에 「청와대 큰마당」이 개설되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또한 정부(공보처)에서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민일반 및 각계

전문가의 국정에 관한 토론자료를 게재하고 있는 「국정신문」(주간, 매주 월요일 발간)의 기사내용을 「여론마당」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토론의 자료로 제시해 국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밖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회)」, 「동방협회(동방문화경제교류협회)」, 「정사협(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온라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컴퓨터통신을 통한 정보이용의 대중화의 국민 의식개혁, 여러 시민단체 및 각계 단체들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등을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보도 94. 6. 21 참조).

이들 협의회에서는 PC통신망인 하이텔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정보교류망을 운영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그린라운드(GR) 등 환경문제, 여성정치참여문제 등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 자료는 관련부처 실무정책 입안자에게 활용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민일반이 국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제도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PC통신의 역할과 기능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매체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때 새롭게 그 위상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야기거리와 같은 단순한 흥미위주의 통신, 이용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오락성·선정성의 정보,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롭지 못한 무절제한 또는 무책임한 정보의 게재 등은 법적제재에 앞서 「정보윤리」의 측면에서도 모두가 삼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학생층에서 이용도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통신매체 보다 정보자료의 게재나 토론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적용

지난 5월 10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는 컴퓨터통신망에 사노맹 관련 이적표현물등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모 피고인(21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표현물의 소지·배포)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94. 5. 11 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통신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

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토론자료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급진적 주장등을 그대로 통신망에 유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밝히고 「피고인은 반국가 이적단체의 조직원이 아니며,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위의 사건에서 피고인 김모군은 반국가 단체의 조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사노맹의 주장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등을 PC통신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적표현물의 제작자는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하였고, 자기(피고인)는 ‘사노맹’의 조직원도 아니고 일반 회원들의 토론자료로서 단순히 PC통신에 ‘게재한’ 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누구든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또한 ‘통신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온통신 게재에 대한 법적논의

이 사건과 관련해 PC통신망에 ‘불온통신’(반국가적·반사회적 통신)을 게재했을 경우 법적인란이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비밀의 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정보화사회」(94.1)에 상세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92.2.25 선고)을 인용하면서 고찰한 바 있다.

다시 강조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가적 법익(국가기밀), 사회적 법익(공서양속), 개인적 법익(명예·사생활 비밀)등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 피고인(김모씨)의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PC통신에 배포하여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둘째, PC통신망에 위와 같이 「이적표현물」 또는 개인의 명예 훼손자료등과 음란·외설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물’이 게재·전파될 때 통신사업자의

책무는 어떠한가. 즉, 위 반국가 이적표현물의 전송중단 또는 삭제가 가능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이를 위반한 통신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위의 ‘이적표현물’ 게재사건은 시행령 제2호 및 제3호에 저촉된다.

이와 같은 ‘불온통신물’이 게재·전파될 경우 PC통신 사업자 즉 통신사업자가 통신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체신부장관」만이 통신사업자에게 당해 불온통신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여부의 판정과 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는 법논리상 적절치 아니하다.

즉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이 어떠 사인(私人)에 의하여 판단되고 제한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헌법 제37조) 법률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통신이용자(불온통신게재자)는 체신부장관의 처분(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익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국가적 이적표현물이나 공서양속을 크게 해치는 음란·외설표현물은 특별한 예고를 가지고 게재되지 않고 하루에도 수천내지 수만건씩 수록되는

정보속에 포함되어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불온표현물을 통신사업자가 발견하는 경우 행정당국이나 사직당국에 통보하여 정지 또는 제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 경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즉, 「잠정적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통신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명문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통신정지 통보를 정보제공자에게 하고 잠정적으로 통신을 보류한 다음 관계당국의 처분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약관’에 통신의 정지등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용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용약관의 내용은 ① 요금에 관한 사항 ②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사항 ③ 이용형태의 제한에 관한 사항등이 법률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②와 ③의 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문화되었고, ‘불온통신’등은 이용자가 통신이용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어 통신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